의안번호	2210852
의 뢰 인	신장식의원
회 답 일	2025.6.25.
추계번호	25D3238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4개 보훈관계법 개정안[1]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조율을 70% 수준으로 인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5억 5,800만원, 2030년 74억 6,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75억 5,300만원(연평균 75억 1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보조율 70% 수준으로 인상(안 제87조)	7,558	7,534	7,510	7,487	7,464	37,553	7,5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7조(수송시설의 이용지원)	국가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87조(수송시설의 이용지원)	O	-

1) 4개 보훈관계법 개정안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, 의안번호 제2210848호)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, 의안번호 제2210849호)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, 제2210851호)
-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, 제2210852호)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본 추계에서 4개 보훈관계법 개정안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은 개별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(보훈보상대상자 포함)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
❑ 국가보훈부에 따르면,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수송시설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

○ 한국철도공사 평균 보조율: 36.4% / 도시철도공사 보조율: 0%

○ 2024년 기준 1인당 한국철도공사 이용금액은 54,092원이나, 이 중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8,213원임

[표 2]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보조금 지급 현황: 2020~2024년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 분		2020	2021	2022	2023	2024	평균
한국철도공사 (고속철도)	대상인원	116,931	115,789	114,398	119,740	118,761	117,124
	이용금액	4,751	4,641	5,593	6,217	6,424	5,525
	보조액 (보조율)	2,403 (50.58%)	1,663 (35.83%)	1,663 (29.73%)	2,163 (34.79%)	2,163 (33.67%)	2,011 (36.40%)
도시철도공사 (도시철도)	이용횟수	–	–	–	4,682,342	4,865,694	4,774,018
	이용금액	2023년부터 전산 연계			6,345	6,593	6,469
	보조액(보조율)	보조 없음					

주: 1) 대상인원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임
2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보훈보상대상자도 수송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자에 포함한 것임
자료: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❑ 본 추계에서는 고속철도의 경우 보조율을 현행(36.40%)에서 35% 추가 인상하고, 도시철도의 경우 보조율을 70%로 하여 각각 보조율이 70% 수준이 되도록 인상함

❑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[2]과 서울특별시 분야별정보[3]에 따르면, 2004년 이후 고속철도(KTX) 요금과 도시철도(서울) 요금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음

○ 고속철도 요금 연평균인상률: 1.36% / 도시철도 요금 연평균인상률: 3.20%

2)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(https://www.data.go.kr/en/data/15119333/fileData.do)
3) 서울특별시 분야별정보(https://news.seoul.go.kr/traffic/archives/345)

[표 3] 고속철도(KTX) 및 지하철 요금 인상 현황: 2004~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04	2007	2012	2015	2023	2025	연평균 인상률
고속철도 (서울-부산)	45,000	49,800	57,300	59,800	59,800	59,800	1.36%
도시철도 (서울, 1구간)	800	900	1,050	1,250	1,400	1,550 (예정)	3.20%

자료: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❑ 본 추계에서는 도시철도 요금이 2025년 6월 28일부로 인상될 예정임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 동안 도시철도 요금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고속철도 요금만 매년 1.36%로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함
- ❑ 개정안은 부칙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❑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수송시설(고속철도, 도시철도)별 이용금액에 각각의 보조율(고속철도 35%, 도시철도 70%)을 적용하여 추계함
- ❑ 추계결과, 4개 보훈관계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보조율을 70% 수준으로 인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5억 5,800만원, 2030년 74억 6,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75억 5,300만원(연평균 75억 1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고속철도	대상인원	118,211	117,349	116,493	115,643	114,800	-	-
	이용금액	6,569	6,610	6,651	6,692	6,734	-	-
	추가보조율	35%	35%	35%	35%	35%	-	-
	추가재정소요	2,299	2,314	2,328	2,342	2,357	11,640	2,328
도시철도	대상인원	118,211	117,349	116,493	115,643	114,800	-	-
	이용금액	7,512	7,458	7,403	7,349	7,296	-	-
	추가보조율	70%	70%	70%	70%	70%	-	-
	추가재정소요	5,259	5,220	5,182	5,144	5,107	25,912	5,182
합계		7,558	7,534	7,510	7,487	7,464	37,553	7,510

주 1. 대상인원은 2025년 기준 인원(119,080명)에 연평균증감률(△0.73%)를 적용함
2. 이용금액은 고속철도의 경우 2024년 기준 1인 평균 이용단가(54,092원)에 연평균인상률(1.36%)을 적용하고, 도시철도의 경우 연평균 이용횟수(41회)와 이용단가(1,550원)를 각각 적용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본 추계는 보훈대상자의 수송시설 이용행태, 수송시설에 대한 보조율, 수송시설 요금인상 등의 과거 추이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이 시행되어 이용행태와 요금 등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na.go.kr